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731	시 민			
결재일자	2014.2.19.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2014년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2014.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무 <input type="checkbox"/>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빗물순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바른 우리말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및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유해야생동물)

■ 생태계교란 생물(18종)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관리하여 건전한 생태계 유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식물은 12종이 지정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 ※ 환삼덩굴은 생태계교란 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집단분포로 다른 식물의 생육 방해하고 고사시켜 제거대상 포함
- 「제7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2012」 결과 한강본류 전 지역에서 붉은귀거북이 높은 서식 밀도로 관찰되어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속 전속에 대한 관리 필요
 - ※ 생태계교란 야생생물(18종) 참조(2012)

■ 유해야생동물

- 야생멧돼지의 서울 도심 주택가 출현에 따른 시민들의 신체·재산상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및 시민 홍보 필요
-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서식처 현황 조사 및 시민홍보 필요

II 추진 방향

- 시민단체, 기업, 학생 등과 연계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 도심출현 멧돼지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 관리대책 강화
- 유해 집비둘기 현황 조사 및 체계적 관리

III 2013년 실적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추진

- 2,105천 m^2 (환삼덩굴 1,419천 m^2 , 단풍잎돼지풀 294천 m^2 , 기타 392 m^2)

■ 붉은귀거북 : 9마리 포획(금천구, 한강 등)

■ 도심출현 멧돼지(소방재난본부, 자치구 실적 통합 관리)

- 출현 횟수 : 135건
(종로구 59, 성북구 38, 은평구 12, 강북구 8, 서대문구 5, 노원구 4, 도봉구 4, 광진구 2, 강남구 1, 강서구 1, 서초구 1)
- 포획 실적 : 총 276마리 중 34마리 포획

IV 분포 현황

■ 생태계교란 식물

- 지역별 분포현황(2013년)

식물명	면적 (천 m^2)	집단분포지역	집중제거시기 (제거적기)
계	2,105		
돼지풀	84	한강(광나루.밤섬.난지.강서습지), 월드컵공원, 인왕산, 효창공원, 북악산, 북한산, 개운산, 오동공원, 진관공원, 녹번서공원, 신사공원, 갈현공원, 안산, 백련산, 계남공원, 안양천, 평고개공원, 관악산, 현충원외곽, 선우공원,	5월~6월

단풍잎돼지풀	294	한강(밤섬.난지.강서습지), 월드컵공원, 인왕산, 서울숲, 중랑천, 진관공원, 봉산, 서오릉공원, 안산, 안양천	5월~6월
서양등골나물	194	월드컵공원, 남산, 응봉공원, 봉산, 서오릉공원, 백련공원, 안산, 계남공원, 관악산, 노량진공원, 용봉정공원, 선우공원, 대모산(일원배수지, 무인변전소 일대), 방이동생태경관보전지역, 성내천, 잠실유수지	4월~7월
가 시 박	114	한강(광나루.잠원.여의도.밤섬.망원.난지.강서습지), 월드컵공원	5월~6월
환 삼 덩 굴	1,419	한강(광나루.잠실.잠원.반포.이촌.여의도.밤섬.망원.난지.강서습지), 월드컵공원, 서울숲, 길동생태공원, 시민의숲, 인왕산, 백사실계곡, 효창공원, 중랑천, 북악산, 북한산, 개운산, 오동공원, 초안산, 진관공원, 녹번서공원, 신사공원, 갈현공원, 백련공원, 안산, 백련산, 궁동산, 흥제천, 불광천, 와우산, 매봉산, 안양천, 봉제산, 개화산, 신구로유수지, 독산배수지, 순흥안씨묘역, 노임약수터, 도림천, 상도공원, 관악산, 봉천동 까치산, 대모산, 청계산, 대모산(일원배수지, 무인변전소 일대), 방이동생태경관보전지역, 성내천, 잠실유수지, 명일공원, 일자산	5월~6월

※ 담당직원의 육안으로 조사

■ 생태계교란 동물 (파충류)

●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파충류) 출현현황

- 「제7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2012)」 결과 붉은귀거북은 한강 본류를 비롯하여 주요지천 대부분에서 관찰됨

구 분	한강본류 (18개지점)	탄천	중랑천	안양천	불광천 흥제천	청계천	여의샐강	서울숲
붉은귀거북	● (4개지점)	●	●	●		●	●	
노란배거북			●					

* 붉은귀거북 발견 한강본류 지점(4개 지점) : 왕숙천합류부~고덕천합류부, 성내천합류부~잠실수중보~탄천합류부, 탄천합류부~중랑천합류부, 흥제천합류부~안양천합류부

■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 야생멧돼지 월별 출현현황(2013년)

- 9월:34건, 8·11월:23건, 10월:19건, 12월:9건, 4월 :7건
-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는 경미하여, 인명피해 없음

월별	출현지역	피해정도	출현횟수(건)
1월	강북구, 종로구	없음	2
2월	-	없음	0
3월	종로구, 은평구	없음	6
4월	종로, 노원, 강서, 성북	없음	7
5월	종로, 성북	없음	4
6월	종로, 강북, 성북	없음	5
7월	성북, 종로	없음	3
8월	종로, 성북, 은평	없음	23
9월	성북, 강북, 은평, 종로, 서초	없음	34
10월	성북, 종로, 서대문, 노원, 광진, 은평, 도봉	시설물피해	19
11월	도봉, 강남, 은평, 종로, 성북, 서대문, 노원, 강북	없음	23
12월	종로, 은평	없음	9

■ 유해 야생동물(집비둘기)

- 집비둘기 서식 현황(2009년 서울시 조사 자료)
 - 총 603개소에서 약 35,575마리 서식 추정
 - 집단서식지(100마리 이상) : 종로 낙산공원 외 33개소를 관리대상 지역(Ⅱ단계)으로 지정하고 관리

V 관리 계획

■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제거

- 기 간 : 2014년 3월 ~ 11월
- 관리대상종 : 5종(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환삼덩굴)
- 서식지별 관리기관

서 식 지	관리기관
서울 전 지역	25개 자치구, 공원녹지사업소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12개 자치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한강변	한강사업본부
한강지천(중랑천 등)	관할 자치구

● 제거방법

- 생태적 우수지역 및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하천변 등을 우선 제거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은 꽃가루 알레르기 발생이 우려되므로 꽃피기 전에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꽃이 핀 후는 작업 지양
- 필요시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
- 밀식지역에 대한 제거작업으로 토양 노출 시 대체 식재 방안 강구
-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활동 계획 시 지역의 시민, 시민단체, 기업 자원봉사 참여 방안을 모색
- 생태계교란 생물은 지속적인 제거활동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제거활동 MOU체결 시 3년 이상 계약체결로 지속성 확보
- 제거지역에 대한 위치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생태계교란 생물(파충류) 관리

● 기 간 : 2014년 3월 ~ 11월

● 대 상 종 : 붉은귀거북속 전속 (8종 20여개 아종)

● 서식실태

- 애완용으로 기르던 붉은귀거북, 노란배거북 등을 인근 지천에 방생하면서 하천에 유입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는 아직 천적이 없으며 각종 어류 등을 가리지 않고 먹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문제를 야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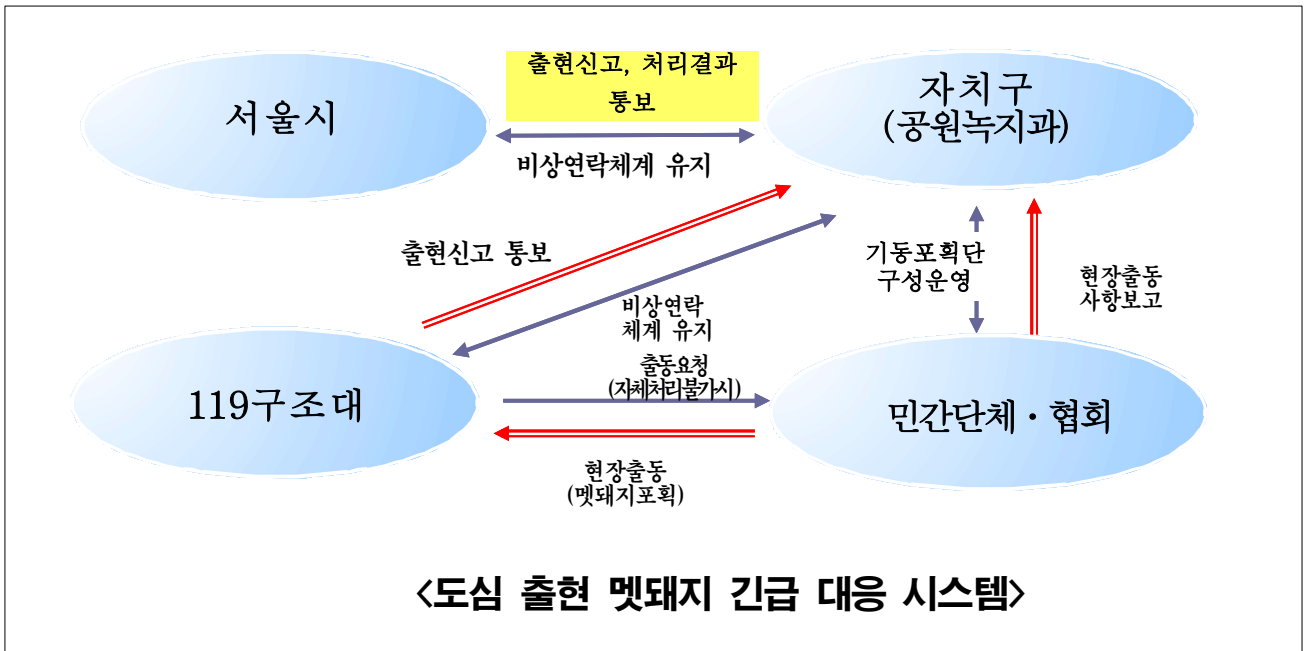
● 관리방법

- 관리기관에서는 자체 포획반을 구성하여 한강, 연못, 지천 등의 붉은귀거북을 지속적으로 포획 (일용인부 등을 적극 활용)
- 포획방법 : 주낙과 같은 낚시법, 먹이를 이용한 bait trap, 일광욕 습성을 이용한 floating trap, 산란기 알제거 등의 방법을 활용

■ 도심출현 멧돼지 관리

● 도심 출현 멧돼지 긴급 대응체계 구축

- 서울시, 자치구, 119구조대, 멧돼지 포획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정비



● 멧돼지 산행주의 안내 및 신고요령 등 홍보

- 홍보 시기 : 2014년 1월 ~ 12월
(도심지 내 연중 출연으로 연중 실시)
- 홍보 대상 : 25개 자치구 관할 구역 내 산림
- 홍보 방법 : 구보, 홈페이지, 홍보 전광판, 안내문(상황별 행동요령)을 활용한 안내 실시 및 출현지점 등에 현수막 설치
- 홍보내용
 - ▶ 멧돼지의 생태·특성, 인간과 공존하는 자연생명체로 올바른 인식 확산
 - ▶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안전 행동요령

- 농작물 재배지역 멧돼지 기피제 배포
 - 멧돼지가 싫어하는 역한 냄새로 멧돼지의 접근 예방(3~6개월 효력발생)
 - ▶ 종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남구 등에 배포
- 도심 유입 사전 방지를 위한 멧돼지 포획틀 시범 설치
- 피해발생시(인명피해 포함) 보상 조례 개정중
 -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확보(양주시의 경우 최대 500만원임)
 - ※ 도심출현 멧돼지 관리대책(자연생태과-608(2014.1.10.)) 및 도심출현 멧돼지 피해방지 및 관리대책(환경부 2011년) 반영

■ 유해 집비둘기 관리

- 유해 집비둘기 관리
 - 비둘기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발생지역 현장조사 후 먹이제공금지 홍보물 설치, 조류기피제 살포, 알·둥지 제거 및 포획 등 적정 조치
 - 자치구별 집비둘기 집단서식지 및 주요 민원 지역에 먹이제공 금지를 위한 홍보(현수막, 홍보전광판)실시
 - 노점, 공원 내 매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 및 주변지역 청소 등을 통한 먹거리 제거를 시설물 관리자에게 권고
 - 서식지 조사(개체수)에 따른 유해집비둘기 관리기준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선정
 - 서식지 유형별 관리 : 공원, 주택가, 철도역사, 문화재 등 서식지 유형에 따른 관리방법을 선정하여 적용
 - AI예방을 위한 공원 등 관리구역내 비둘기 배설물 제거
 - ※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3, 환경부, 자연생태과-3396(2010.03.17)) 및 유해 집비둘기 포획관련 사항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13.7.25, 환경부) 반영

VI

행 정 사 항

- 관리기관별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야생동물 세부관리계획 수립 후 자연생태과 제출 : '14.2.28(금)까지
- 조류기피제 신청(50개 한정) : '14.2.28(금)까지
-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야생동물(비둘기, 까치 등) 관리실적 보고(붙임3 서식)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 멧돼지 출현(신고) 시 자연생태과 유선 통보 및 출현상황 보고(붙임4 서식) (휴일에는 핸드폰, 메일)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출현시 즉시 보고)
- 생태계교란 식물은 분포면적이 넓고 번식력이 강해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기업체 등과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활동 MOU체결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

- 붙 임 1.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및 관리방법(18종) 1부.
2. 유해야생동물 현황 1부.
3.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야생동물(비둘기) 관리실적 보고양식(분기별) 1부.
- 생태계교란 식물, 붉은귀거북, 집비둘기, 기타 유해야생동물
4. 멧돼지 도심출현 현황 등 관리실적 보고양식(분기별) 1부.
5.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국민행동요령 안내문 1부.
6.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관리협약 체결문(안) 1부.
7. 기관별 예산 재배정계획 1부.
8. 조류기피제 배부요청 서식 1부. 끝.